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임종득・김정재・송언석

김상훈 • 서천호 • 김형동

권성동 · 강대식 · 이상휘

유용원 · 이인선 · 김승수

구자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 다. 정보보호체계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 ·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 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5.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 9.「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 10.「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지원
-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 3 |
|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 |
|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 | |
| 를 말한다. | |
|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 <u>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u> |
|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 | 관리 체계 |
| 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 |
|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 |
|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 |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 |
| 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 <u>계</u> |
| 출입 • 접근 • 열람 등을 통 | |
| 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 |
|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 | |
| 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 |
| 위한 체계 | |
|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 | 다. 정보보호체계 |
|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 | |
| 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 | |
| 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 |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 유출 | 및 |
|-----------------|------|----------|
| 침해 금지)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 4. 제19조 또는 대성 | 상기관교 | <u> </u> |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 함한 방위산업기술----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 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 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 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 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u>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u> 보호지 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

- 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의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
-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 약점 점검 업무 지원
-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 5.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u>제10조제1호 및</u> <u>제2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20년 이하의 징역 또는</u> <u>20억원 이하의 벌금에</u> 처한다. <<u>후단 신설></u>

② <u>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u>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시 업무 지원

-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 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 10. 「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 른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지 원
-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1조(벌칙) (| 1 | |
|------------|------------|--|
| 세21소(별식) (| <u>1</u>) | |

- _____
- -----<u>제10조제1호·</u> 제2호 및 제4호에-----
- ------<u>1년 이상의 유</u> <u>기징역에-----</u>. <u>이 경우 20억</u>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② <u>제10</u>조제1호·제2호 및 제4 <u>호에</u>-----

| 의 벌금에 처한다. |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 | ⑦ <u>제2항부터</u> |
| 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 | |
| 다. | |